

존중과 참여로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 조성

# 2023개정 학생생활규정



전주하가초등학교



# 전주하가초등학교 학생생활규정

제정 2017. 03. 01.

전면 개정 2021. 04. 13.

전면 개정 2023. 12. 04.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및 「전주하가초등학교 학교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교육 3주체의 책임과 역할)** ①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보호·실현하고 학생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학교 공동체의 인권문화를 존중하고 실천하며, 학교 및 교원의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육 활동(이하 “교육활동”이라 한다)을 존중하고 협력하며 학생의 참여 하에 정해진 학교 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학생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학교의 장과 교원의 전문적인 판단과 생활지도를 존중해야 하며, 학생이 학칙을 준수하도록 지도하여 교육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력해야 한다.

## 제2장 학생의 권리와 책임

제3조(학생의 권리) 모든 학생은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제5조부터 제27조까지의 규정에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학습에 관한 권리
2.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3.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4.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5.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6. 안전에 대한 권리
7. 휴식을 취할 권리
8. 개성을 실현할 권리
9. 사생활의 자유
10.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11. 정보에 관한 권리
12. 양심·종교의 자유
13. 표현의 자유
14. 자치활동의 권리
15.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16.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17. 복지에 관한 권리
18.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19. 문화활동에 참여할 권리
20. 급식에 대한 권리
21. 건강에 관한 권리
22.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23. 상담과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
24. 그 밖의 보편타당한 권리

**제4조(학생의 책임)** 학생은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이 있다.

1.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할 책임
2. 수업 등 교육활동에 성실히 참여할 책임
3.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을 책임
4. 교원의 교육활동 및 교육적 권한을 존중할 책임
5. 학교규칙과 규정을 준수할 책임
6. 학생간 서로 존중하며 학교폭력을 일으키지 않을 책임
7. 바른말과 글을 쓰고 정보통신 윤리를 준수할 책임
8. 수업 등 교육활동 중에 전자기기 사용 규칙을 지킬 책임
9. 학교 환경을 소중히 하고 학교 내 공공기물을 소중히 다룰 책임
10. 자신과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노력할 책임
11. 그 밖의 보편타당한 학생의 책임

### 제3장 학생의 기본생활

- 제5조(기본행동)** ① 학생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를 존중하고 따른다.
- ② 학생은 욕설, 비난 등 모욕적인 말과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③ 학생은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④ 학생은 다른 사람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글, 상징, 혐오 표현 등을 사용하지 않으며, 이를 표현하는 복장이나 장식물 등을 착용하지 않는다.
- ⑤ 학생은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게 행동한다.
- ⑥ 학생은 교원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인권우호적 의사소통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 제6조(수업 태도)** ① 학생은 수업을 비롯한 교육활동의 시작과 끝 시간을 지킨다.
- ② 학생은 교원의 수업 진행과 다른 학생의 학습을 방해하지 않는다.
- ③ 학생은 수업에 필요한 교재, 준비물을 가지고 참여한다.
- ④ 학생은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수면이나 휴식이 꼭 필요할 때는 교원에게 허락을 받는다.
- ⑤ 학생은 교원의 허락 없이 본시 교과 이외의 과목을 공부하지 않는다.
- ⑥ 학생은 교원의 수업권과 타인의 학습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할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른 책임을 진다.
- ⑦ 학생은 교육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의 허락 없이 해당 교육활동의 내용에 대한 실시간 송출, 녹화, 녹음 등을 하지 않는다.

**제7조(휴식시간과 여가활동)** ①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들의 휴식시간(식사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장한다. 다만, 필요할 경우 비례의 원칙에 따라 최소의 범위내에서 교육활동, 생활지도 등을 할 수 있다.

○ 비례의 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으로 목적의 정당성, 방법의 적절성, 법익의 균형성, 제한의 최소성을 지키는 것

- ② 학생은 휴식시간에 자신의 취미와 적성을 살린 활동을 할 수 있다.
- ③ 학생은 휴식시간에 전산실, 음악실, 체육실, 도서실 등의 특별실은 교원의 허락을 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용규칙을 지킨다.
- ④ 학생은 교원의 허락 없이 학교 밖에 나가지 않는다.
- ⑤ 학생은 다른 사람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한 장난이나 활동을 하지 않는다.

- 제8조(시설 이용과 환경)** ① 학생은 학교의 시설물을 아끼고 학습도구를 소중히 사용한다.
- ② 학생은 방과후나 휴일에 학교 시설을 이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 사전에 학교의 장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
- ③ 학생은 수돗물, 전기 등을 낭비하지 않고 에너지를 절약한다.
- ④ 학생은 쾌적한 수업과 학급생활을 위해 청결, 정리정돈 등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제9조(개인 소유물)** ① 다른 사람의 물건을 소중히 여기고 허락 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②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훼손하거나 훔쳤을 때는 학생과 그 보호자가 책임진다.

**제10조(소지 · 사용 금지 물품)** 학생은 공동체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을 가지고 있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활동을 위하여 학교의 장이 허가한 경우는 사용할 수 있다.

1.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2.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3. 그 밖에 학칙으로 정한 각호의 소지 · 사용을 금지한 물품
  - 가. 소지 금지 물품
    - 1) 성냥, 라이터, 폭죽, 미용 기구(드라이기, 고데기) 등의 인화물질이나 전열기
    - 2) 칼, 쇠파이프, 공구류, 고무총, 각목 등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는 물품
    - 3) 레이저 포인터 등 레이저 기구
    - 4) 모든 형태의 도박 물품
    - 5) 인권침해, 혐오표현, 폭력행위를 표현하는 물품
    - 6) 성적 불쾌감을 일으키는 각종 자료나 물품
    - 7) 담배, 주류, 부탄가스, 본드, 마약, 향정신성 약물
    - 8) 그 밖에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매체물, 청소년유해매체물 · 청소년유해약물 등
  - 나. 교육활동 중 사용 금지 물품
    - 1)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이하 “전자기기”라 한다)
    - 2) 과도한 소음 등을 발생시켜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도구 및 장치 등
    - 3) 장난감, 인형, 카드 등 개인 완구

**제11조(소지 물품 조사)** ① 제10조에 따른 가지고 있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학생이 소지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교원은 불특정 다수의 학생(전 학년 · 특정 학년 · 특정 집단 등) 대상으로 정기적 · 일괄적으로 검사해서는 안 된다.

- ② 교원이 소지 물품을 조사할 때는 학생에게 소지 물품 조사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고 동의를 구해야 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른 소지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이 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교원은 학생이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 ·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 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 ④ 교원은 소지 물품 검사 과정에서 학생이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낄 만한 표현이나 언행을 하지 않도록 한다. (예: 공개된 장소에서의 검사, 학생 가방을 뒤집어 흔들어 쏟아내는 행위 등)

**제12조(학생 개인물품 관리)**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과 청소년이 소지하기에 부적절한 물품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를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 ② 교원은 사안이 처리된 후에는 보호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 ③ 학생이 수업 등 교육활동과 관련이 없는 물품을 사용한 경우는 해당 수업 또는 교육활동 시간 동안 제출하도록 하여 교원이 보관할 수 있다.
- ④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12조제9항에 따라 학생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보관 방법 및 기한은 [별표1]과 같다.

**제13조(전자기기 사용)** ① 학생은 교육활동 중 휴대전화를 포함한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목적 및 긴급한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교원이 허가한 경우는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 ② 교원은 교육활동 중 학생이 전자기기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한 경우 해당 학생의 전자기기를 수거 · 관리할 수 있다.

- 제14조(정보통신 윤리)** ① 학생은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정보와 사생활을 존중·보호하고,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한다.
- ② 학생은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하여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③ 학생은 음란, 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유해매체를 공유하거나 학교에 가지고 오지 않는다.
- ④ 학생은 다른 사람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 ⑤ 학생은 다른 사람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 제4장 학생생활지도

**제15조(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고시 제5조에 따른 학업 및 진로·제6조에 따른 보건 및 안전·제7조에 따른 인성 및 대인관계·제8조에 따른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제16조(교사의 권한)** 생활교육에 있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교사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적 상담 및 조언
2. 교육환경 조성
3. 시정 요구(주의)
4.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5.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요구 및 의견 제출
6. 교권보호위원회 구제 신청

**제17조(체벌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 체벌에 해당하는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하는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인권조례 9조)

1. 도구에 의한 체벌
2.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3.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느끼게 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5. 학생 교육에 부적합한 욕설 등의 폭력적인 언어

**제18조(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①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

② 교사는 학생의 행동성찰 및 바람직한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훈계·훈육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2. 적정한 수준의 과제 부여 및 방과 후 교육
  3. 시설·물품의 훼손이나 오염 등에 대한 원상복구 요구나 청소 명령
  4. 학부모 통보 및 상담
  5.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시 학생 분리(제19조 관련)
  6. 기타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우호적인 교육적 조치
- ③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학생 분리)** ①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해당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분리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은 세부사항은 [별표2]와 같다.

1.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위치로의 이동(실외 교육활동 시 학습집단으로부터의 분리를 포함한다)
  2. 수업시간 중 교실 밖 지정된 장소로의 분리
  3. 정규수업 외의 시간에 특정 장소로의 분리
- ② 교육활동 방해가 이전부터 지속되어왔고, 피해 대상이 광범위한 경우에 제 1호 지도를 생략하고 2, 3호를 우선 실시할 수 있다.
- ③ 학교의 장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

## 제5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20조(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초·중등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및 이 규정 제20조에 따른 학생 징계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학생생활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원 중에서 교장이 임명한다. 이 경우 학부모 및 학생생활 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 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 초부터 말까지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구성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제2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1. 교장이 요청하는 경우
-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개최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정보통신매체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가 된다.

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위원회 제척 · 기피 및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

- 1. 해당 사안과 관련된 학생 또는 그 보호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 2.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된 사람인 경우

-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4조(징계 원칙)** 학교장은 징계를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해야 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3.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해야 한다.
4.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5조(징계의 종류와 기간)**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 내 봉사 :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2. 사회봉사 :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3. 특별교육이수 : 1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5. 훈계·훈육, 학생 분리조치, 상담교육,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않고 학생 교육의 한 방법으로 한다.

**제26조(징계의 방법)** 징계의 세부적인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내 봉사 :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수업 전후, 점심 시간, 방과 후 등) 실시한다.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학생은 생활담당 교사 또는 담임교사 등의 교육을 받으며 봉사활동(교내 환경美化, 도서·교재·교구정비, 학교 인성인권교육 차원의 프로그램,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2. 사회봉사 :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사회봉사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고 추가 조치한다.
3. 특별교육이수 : 해당 학생은 전라북도 교육감이 설치·위탁 운영하는 시설과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지정한 전문 상담기관에서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이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고 추가 조치한다.
4. 출석정지 : 해당 학생은 출석정지 처분기간에 가정학습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모님의 보호·감독이 어려울 경우 학교 상담실 등 교내 지정된 장소에서 자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 출석정지 기간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하며,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5. 사회봉사 또는 특별교육이수는 보호자가 학생을 지정된 장소까지 동행하여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한다.

**제27조(징계 적용 기준)** 학생의 징계 조치별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한다.

1. 징계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2. 징계 행위를 한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3. 징계 행위를 한 학생과 피해를 입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도
4. 징계 학생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임신 여부, 장애 여부, 노약자 등 여부 및 그 정도
5. 징계 행위를 한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제28조(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①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여부와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교육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③ 학생 또는 보호자는 징계 결과가 통보된 후 5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학교의 장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징계 경감과 해제)** ①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해당 학생의 문제 행동이 확연히 개선되고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학생 지도 교사와 협의하여 처벌의 경감 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②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평가에 응시하되, 평가 참여 기간은 징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30조(조치 미이행)** 학생 및 학부모가 조치 결과를 알게 된지 3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학교장은 더 높은 단계의 조치를 가중하여 내리거나, 다른 조치를 병과할 수 있다.

## 제6장 학생생활규정 개정

- 제31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①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3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 한다. 학생위원은 전체의 25%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사람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

- 제32조(개정안의 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생활규정의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교직원회의 의결
3. 학부모회의 의결
4. 학생회의 의결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 제33조(문헌조사 및 의견수렴)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해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문헌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34조(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확정하여 공포한다. 이때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35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교홈페이지에 게재하며 가정통신문 발송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개정 내용을 안내한다.

##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 ■ 전주하가초등학교 학생의 학생생활에 관한 규정 [별표 1]

#### 학생으로부터 분리·보관할 수 있는 물품의 보관 방법(제12조 관련)

요건	분리기간	분리장소	분리방법
1 제12조 제3항에 따라 2회 이상 주의를 주었음에도 학생이 계속 사용하는 물품	수업시간	교실 지정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li>1회차 : 주의 실시</li><li>2회차 : 주의와 함께 분리보관 할 수 있음을 알림</li><li>3회차 : 주의를 2회 이상 주었음을 알리고 물품 분리보관</li><li>수업 종료 후 : 즉시 되돌려줌</li></ul>
2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물품 (예시) 흡기, 라이터, 레이저빔 기기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li>분리보관 사유를 알림</li><li>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받아 학교의 장에게 신고</li></ul> <p>※ 물품분리보관 일지를 작성 관리하고 분리 물품에 대해 학부모에게 안내하며 학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보관기관 경과 후 학부모에게 되돌려줌</p>
3 관련 법령에 따라 학생에게 판매될 수 없는 물품 (예시) 술, 담배 등	3일	교무실 등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	<p>※ 학부모가 반환받을 의사가 없는 경우 또는 보관 기일 경과 후 3일이 지나도 반환받지 않는 경우 폐기 조치</p>
4 기타 학칙으로 금지한 물품 (예시) 도색잡지 등			

■ 전주하가초등학교 학생의 학생생활에 관한 규정 [별표 2]

학생 분리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 (제19조 관련)

※ 교육활동 방해가 이전부터 지속되어왔고, 피해 대상이 광범위한 경우에 제1호 지도를 생략하고 2, 3호를 우선 실시할 수 있음.

생활지도	요건		분리장소(시간)	절차 및 유의점	학습지원
제2호 지도	가	제1호 지도(교실내 다른 위치로의 이동)에도 불구하고 교육활동을 지속 방해할 경우	학생을 지도감독 할 수 있는 개방된 교실 앞문 밖 <b>복도</b> (수업 시간 내 일부)	주의를 준 후 실시, 학생에게 자기 책상과 의자를 준비하게 할 수 있음	교과 내용 관련 또는 행동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제 부여
	나	① 수업 중 학생 간 물리적 다툼으로 수업을 방해하는 경우 또는 ② '가'에 따른 지도에도 행동 개선이 없는 경우	나눔방, 상담실, 교무실, 교장실 등 학교의 장이 지정한 <b>교내 별도의 장소</b> (분리가 실시된 수업의 다음 수업 종료시까지)	◦ 교사가 교무실에 학생인계 요청 ◦ 임장지도교사 우선 순위 표에 따라 배정된 교직원이 학생을 인계하여 지정 장소로 이동	
제3호 지도	가	수업시간에 자각하여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	교실 등 (점심시간 내 20분 내외)	식사에 필요한 최소시간(20분) 보장	교과 내용 관련 또는 행동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과제 부여
	나	① 2호 '나의 지도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경우 또는 ②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b>자료가 필요한 경우</b>	학교의 장이 지정한 <b>교내 별도의 장소</b> (60분 이내)	학교장이 학부모에게 지도 시간과 사유를 사전에 통지	
보호자에게 인계 (제19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학생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근거: 교육부 고시 제12조 제7항)		학생 가정 (당일에 한함)	◦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징계에 의한 출석 정지가 아니므로 출석에 영향 없음.  ◦ 학교장이 보호자에게 통지하고 [일시분리로 인한 가정학습 실시 학부모 확인서]를 가정으로 보내, 분리 종료시 다시 학교에 제출	